

자 문 용 역 계 약 서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에 위치하고 있는 ㈜아이피에스(이하 "갑"이라 한다)에 대한 자금유치관련 경영자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-4 로담코타워 3 층에 위치하고 있는 ㈜이아이피오 (이하 "을"이라 한다)를 자문회사로 지정하고, 자문수행기간 중 "갑"과 "을"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신뢰 하에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자문내용)

"을"은 "갑"과 다음과 같은 자문내용을 협의하여 제공한다.

- ① "을"은 다음과 같은 자금유치 관련 서비스를 "갑"에게 제공한다.
 - 1. 국내외 자금의 유치를 주선
 - 2. 실사를 기반으로 한 적정기업가치 산출
 - 3. 자금유치관련 Documentation 작업 지원

제 3 조 (계약의 기간)

- ① 자문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자금이 유치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
- ② "갑"과 "을"중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서면에 의하여 해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자문의 수행장소 및 장비)

- ① 자문의 수행장소는 "갑"이 제공하는 장소나 "을"의 사무실로 한다.
- ② 자문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는 "을"의 요청에 따라 "갑"이 자문수행장소에 설치한다. 설비 및 기자재는 책상, 전원장치, 컴퓨터, 통신장비 등의 업무 기본 장비를 말한다.

제 5 조 (계약자의 상호의무)

- ① "갑"과 "을" 쌍방은 원활한 자문수행을 위하여 상호협조하며, "갑"은 "을"로부터 자문수행에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나 업무를 요청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
- ② "갑"은 "을"이 자문수행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였을 경우 "갑"이 그 요청을 인정하면 지원팀을







구성하여 "을"의 자문팀과 협력한다.

- ③ "갑"은 "을"이 회의소집, 임직원 면담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"을"은 "갑"으로부터 자문수행과 관련한 제반 자료나 관련 서류, 국내외 타사 현황 및 참고 문헌 등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자문수행태도 및 비밀유지)

- ① "갑"은 자문수행기간 동안 "을"의 자문 이행 과정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으며, "을"은 시기 적절하게 자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② "을"은 자문수행 과정이나 자문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에도 자문업무를 통해 입수하거나 교환한 "갑"의 업무기밀 정보를 비밀유지하며 "갑"의 사전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.
- ③ 자문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"을"의 방법론과 분석도구 및 자문결과는 "갑"의 내부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.
- ④ "을"이 본조 ②항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"을"이 부담한다.
- ⑤ " 갑"이 본조 ③항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" 갑"이 부담한다.

제 7 조 (자문료의 내용 및 지급 방법)

- "갑"은 "을"의 자문대가로 아래와 같이 자문료를 "을"에게 지급한다.
- ① 자금유치가 성사되었을 경우 유치금액의 2.5%를 성과보수로 지급한다.(부가가치세 별도)
- ② "갑"은 "을"의 청구서를 수령한지 2주 이내에 해당 금액을 "을"에게 지불해야 한다. "갑"이 청구서 수령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지불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,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. 청구서의 일부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, 분쟁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불되어야한다.





제 8 조 (계약의 종료)

본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계약종료일로 본다.

제 9 조 (계약의 변경)

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계약의 해제 및 해지)

- ① "갑"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,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.
 - 1. "을"이 본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"갑"의 서면통지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.
 - 2. "을"의 태만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.
- ② "을"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,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1. "갑"의 태만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"을"이 더이상 계약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.
 - 2. "갑"에 관하여 회사정리, 파산, 화의, 청산절차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, "갑"의 주요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, 가압류, 기타 강제집행 또는 그 보전을 위한 신청이 있거나, "갑"의 재정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.
- ③ 본 조 제①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,"을"은 기성분에 대한 자문료를 "갑"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(양도불가)

"갑"과 "을"은 상호간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 12 조 (상호책임)

- ① "갑"은 "을"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"갑"의 행위로 인해 "을"에게 어떠한 법적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으며, "갑"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을 "을"에게 즉시 보상한다.
- ② "을"은 "갑"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"을"의 행위로 인해 "갑"에게 어떠한 법적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으며, "을"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을 "갑"에게 즉시 보상한다.

제13조 (불가항력)

어느 일방 당사자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이행의 지연, 중단 또는 실패에

3





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 14 조 (기타)

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"갑"과 "을"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,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"갑"과 "을"은 각각 원본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.

2001.

"갑" ㈜아이피에스



"을" 뛰이아이피오



